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여성가족재단, 환경산업진흥원, 청소년미래재단 –

2023. 8.

전라남도
JeollaNamdo
[감 사 관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여성가족재단, 환경산업진흥원, 청소년미래재단의 조직·인사 운영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사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여성가족재단, 청소년미래재단 : ’20년 7월부터 ’23년 2월까지

○ 환경산업진흥원 : ‘19. 1월부터 ’23년 2월까지

3. 감사기간 및 인원

○ ’23. 4. 17.부터 4. 21.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대상 기관	총계 (가:다)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모범 사례 (다)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F)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권고 (E)	기관 경고 (F)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부과	감액	기타						
합계	**29**	**4 (5)**		**4 (5)**	**22**	**1**						**1**	**14**	**2**	**4**	**1**		**3**
여성가족재단	7	1 (1)		1 (1)	5	-	-						3	1	1			1
환경산업진흥원	11	1 (1)		1 (1)	9	-							5	1	2	1		1
청소년미래재단	11	2 (3)		2 (3)	8	1 ()	-					1	6	-	1			1

Ⅲ. 주요 처분요구

1 여성가족재단 5건

①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 위 재단(경영전략팀)은 '20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9차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관리 및 직원채용·승진 등을 심의·의결함

○ 「재단 인사규정」 제29조 등에 재단은 인사관리 및 상벌 등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도록 규정

○ 한편 「ㅇㅇㅇㅇ연구원 직제 및 인사규정」 제30조 등에 위원회는 도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규정

○ 또한 「ㅇㅇ재단 인사규정」 제27조 등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도록 규정

○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9조 등에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시·군**은 **부시장·부군수**가 되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20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9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장**이 **심의안건**으로 **직원채용 등 14건**을 **상정**한 후 **원장**(위원장 겸임)이 **심의·의결**하여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규정 개정** 등을 **미검토**

☞ 앞으로 전남도 출연기관 등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참고하여 원장을 제외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2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재단(경영전략팀)은 '21년부터 '22년까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직 및 특정직 등 28명을 신규 채용함

○ 「재단 인사규정」 제11조 7항에 **면접시험**은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높은 순서**로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 11조 등에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하도록 규정

○ 한편 '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제11조 제2항에 **면접절차, 평가항목, 동점자 처리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하고, **채용공고 시 공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22. 9. 14. **일반직 6급**(1명) **채용 공고**하면서 **면접시험 동점자 처리방법**에 대하여 **채용계획 미수립·미공개**하였는데도 '22. 12. 29. 면접시험 **동점자 2명**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면접 재시험**을 **실시**하여 1명을 최종합격자로 처리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제11조 제7항을 참고하여 「재단 인사규정」 제11조 7항에 면접시험 시 동점자 처리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도상 개선"**

3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 위 재단(경영전략팀)은 ’20. 4월부터 ’23. 2월까지 직원의 외부강의, 유연근무제, 출장 등 복무 사항에 대하여 관리

1. 외부강의 신고·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 「재단 행동강령」 제26조 등에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는 미리 **원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22. 10월부터 ’22. 11월까지 ㅇㅇㅇ이 한국ㅇㅇㅇ대학 등에서 **월 5회**와 **월 7회**의 **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원장 승인없이 외부강의**를 하도록 부적정 처리

- 또한 ㅇㅇㅇ으로부터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 신고서를 접수*하고도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복무관리** 부적정

* ㅇㅇㅇㅇ사업 컨설팅(월 5회씩) : ’22. 7. 1.~7. 7.(5일간), ’22. 8. 22.~8. 26.(5일간)

2. 출장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재단 복무규정」 제41조 등에 **출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한편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 Ⅶ. 출장 사례별 조치가능 여부에 **같은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경조사**에 **기관 대표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경우 **2인 이내**의 **직원**에 대하여 **출장**이 **가능**하다고 규정

-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21. 10. 12., ’21. 10. 27.에 ㅇㅇㅇ 등 **2명**이 **소속 직원**이 **아닌** ㅇㅇㅇㅇ연구원 원장 모친상 방문 등 **3건**을 **출장**으로 부적정하게 업무처리

3. 유연근무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 「재단 복무규정」 제12조 등에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지각**하게 되는 **경우**는 미리 **부서장** 등에게 **알려야** 하고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는 **사후**에 **알리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 제21조 등에 직원이 **지각**을 **했을 경우**에 **해당 시간은 무급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연차휴가 일수**에서 **빼거나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 한편 재단은 ’20. 1월부터 ’23. 2월까지 출·퇴근 시 출입통제시스템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복무를 관리 중

-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20. 4월부터 ’23. 2월까지 ㅇㅇㅇ 등 **9명**이 **출·퇴근 지문**을 **미입력**하여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총 **ㅇㅇ시간**을 **연가일수**에서 **빼거나 연장근무**를 **미실시**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 외부강의 승인점검 부적정, 출장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팀장에게 **“훈계요구”**

☞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외부강의 승인 및 출·퇴근 시 출입통제시스템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입력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④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 재단(경영전략팀 등)은 ’20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를 추진

1. 예산편성 및 통장 인영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제2장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

○ 또한 「재단 회계관리규정」 제7조에 **지출원**은 **ㅇㅇㅇ팀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 그리고 「재단 인장관리규정」 제5조에 **인장**은 ㅇㅇㅇㅇ**팀**에서 **교부 관리**하고, **인장**을 **신조, 폐기** 등 하였을 때 **인영 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ㅇㅇㅇㅇㅇ센터)은 ’23. 4. 21. 감사일 현재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입주자 부담금*** **535만원**을 **예산에 미편성**한 채 **부적정 운영**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임대주택 입주시 입주자는 부담금을 700천원 이내로 납부하고, 운영기관 통장에 예치하며, 입주자가 퇴거시 체납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반환

- 또한 **인영대장**에 **미등록**된 ㅇㅇㅇㅇㅇ장 **인장**을 **입주자 부담금 관리통장**에 **날인·관리**하고 있다가 **감사기간 중**에 **적발**되자 **’23. 4. 21. 재단 지출원인**으로 **인장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2. 예산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 「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 시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또한 「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제3장에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 비용**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업무비** 또는 **부서운영업무비**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20. 7월부터 '22. 9월까지 '여성가족재단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연찬' 등 **72건(572만원) 업무추진비 지출 건**에 대해 **최소 2건, 최대 7건**을 **묶어 총 19건**으로 **일괄 작성**하여 부적정하게 처리

- 또한 '20. 4월부터 '22. 8월까지 '손님 접대용 차류 구입' 등 **7건, 38만원**을 정원가산업무비 또는 부서운영업무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부적정** 집행

나.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미준수

○ 행안부「지방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제2장에 **행사·홍보비**에서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식비** 등을 **집행**할 수 **없고,** 행사실비 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일·생활균형센터 등 2개 센터)은 '20년 5월부터 '21년 12월까지 '가족ㅇㅇ ㅇㅇㅇㅇ 업무협약' 등 **16건 행사 참석자 식비 524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부적정 집행**

다. 사업비 부적정 차용

○「재단 회계관리규정」제82조에 **출납원**은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私金)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되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ㅇㅇㅇㅇ센터)은 '22. 1월부터 '23. 1월까지 보조금 교부지연 등을 사유로 **6건, 1,002만원**을 **개인 통장**(상조회) **등***에서 **차용 집행**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상환**하고 있어 **부적정 처리**

* (ㅇㅇㅇ상조회 통장) 1회, 1,000천원 / (ㅇㅇㅇ부담금 통장) 5회, 9,023천원

☞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관련 지침을 준용하고, 인영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미확인

□ 재단(경영전략팀)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재단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 업무를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자** 등과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2. 5. 19.부터 ’23. 2월까지 체결한 **36건, 2억 3,668만원**의 **수의계약**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검토 누락**

☞ 앞으로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주의요구”**

2 환경산업진흥원 7건

1 진흥원 주기능 외 사업 추진 부적정

□ 위 진흥원은 지역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13. 3월 350억원(국비 145, 도비 145, 군비 60)을 투입하여 강진산단에 설립·운영 중

○ 「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 제1조 및 「진흥원 정관」 제6조에 **환경산업진흥원 설립목적**은 **환경산업육성지원**에 필요한 **기술개발, 창업, 시제품 생산** 및 **실험인증** 등을 위하도록 규정

○ 또한 「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 제4조 및 「진흥원 정관」 제4조에 **진흥원**은 **환경실증실험지원사업, 측정업무 대행사업, 환경산업체 창업·보육·마케팅 지원사업,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

○ 그리고 「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 제6조에 도지사는 **환경산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 시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은 '19년부터 '23. 2월까지 **환경산업육성지원**과 **무관한** '○○군 ○○상인 창업 지원사업' 등 **일자리사업 11건 185억 31백만원**을 위탁·수행하여 진흥원 **설립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수행

☞ 앞으로 환경산업 관련 사업에 공모·선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진흥원 목적사업인 환경산업육성지원사업에 주력하도록 **"권고"**

2 정기감사 미실시 등 자체감사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기획부)은 '13. 3월부터 '23. 2월까지 지역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산업 지원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예산은 78억에서 380억, 인원은 42명에서 57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

〈최근 5년간 예산 및 인원 현황〉

(단위 : 억원, 명)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간 증가률
예산	78	166	222	337	380	387%
인원	42	46	53	55	57	36%

○ 「진흥원 감사규정」 제3조 등에 **회계 업무, 사업계획** 및 **집행,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업무**에 대해 **1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에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도록 규정

○ 한편 전라남도ㅇㅇㅇㅇㅇㅇㅇ진흥원 등 5개 출연기관은 감사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독립적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 중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미실시**

- 또한 '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독립된 감사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채 ㅇㅇㅇ 팀장 등 3명에게 **경영기획부**(경영기획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감사 업무처리 부적정**

☞ 최근 5년간 확대된 예산과 조직에 대하여 회계업무, 사업계획 등을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3 피복비 집행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기획부)은 '19년부터 '22년까지 임직원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피복비 5,554만원*의 예산을 집행

* ('19년) 869만원, ('20년) 1,760만원, ('21년) 1,475만원, ('22년) 1,450만원

○ 「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행안부) Ⅱ 항목별 집행지침에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 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고, 경비원, 청소원 등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여 구입 할 경우 **집행**하도록 규정

○ 한편 「진흥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19년부터 '22년까지 피복비 지급 대상이 아닌 임직원 총 206명에게 4회에 걸쳐 **5,554만원**의 **피복비**를 **부적정 집행**

〈피복비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명)

연번	지급대상	집행일	구매처	집행액	구입품목	집행사유
합계	206명		4건	55,544	-	-
1	46명	2019.11.15.	○○○○	8,694	바람막이	근무 의욕 고취
2	43명	2020.05.27.	○○○○	17,600	상의, 하의, 신발	근무 의욕 고취
3	59명	2021.08.11.	○○○○○	14,750	상의, 하의, 신발	근무 의욕 고취
4	58명	2022.05.19.	○○○○	14,500	상의, 하의, 바람막이	근무 의욕 고취

☞ 앞으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피복비는 업무성격 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주의요구"**

4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초과 집행

□ 위 진흥원(기업지원부 등 2개 부서)은 '19년부터 '22년까지 시책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3,764만원을 집행

○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행안부)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도록 규정

○ 또한 「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출연기관별 연간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편성**하도록 규정

* 진흥원 시책업무추진비 연간 기준액 : '19년부터 '22년까지 연간 10백만원

-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 등 2개 부서)은 '19. 8월부터 '22. 12월까지 시책사업 행사 홍보물·기념품을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 **11건 6,743만원**을 **행사 운영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초과 집행**

☞ 앞으로 세출예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5 차량 임차계약 부적정 및 저공해자동차 의무 임차 미이행

□ 위 진흥원(경영기획부)은 '19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 환경산업 육성 수행을 위해 23대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관리 중

1. 차량 임차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에 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추정가격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임차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그리고 「계약집행기준」 제1장에 계약담당자는 **용역 물품**에 대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19년부터 '23년 1월까지 **차량 임차용역**을 최소 2건, 최대 10건으로 분할*하여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3년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채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 차량 임차계약 현황(22건, 27,699만원) : 19년 10건(5,290만원), '20년 2건(5,508만원), '21년 4건(6,108만원), '22년 4건(7,049만원), '23년 2건(3,744만원)

2. 저공해자동차 의무 임차 미이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6대 이상** 자동차 운행한 출연기관은 **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도록 규정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한편 진흥원은 '19. 12. 31.기준 산타페 등 **승용차 7대를 임차**·운영하고 있어 '21년부터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대상기관**에 **해당**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1년부터 ㅇㅇㅇㅇㅇ 등 **10대 업무용 승용차**를 1종 저공해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임차**하여 **저공해자동차 의무 임차 미이행**

☞ 차량 임차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담당 부장 **"훈계요구"**

☞ 앞으로 차량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단일용역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체결하고, 업무용 승용차량은 1종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주의요구**"

⑥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 개정 소홀

□ 위 진흥원(경영기획부 등 2개 부서)은 '13. 3월부터 지역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원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제정·운영 중

1.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미흡

○ 「진흥원 인사규정」 제25조 등에 **임직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하고, **음주운전 징계대상자**는 **최소 견책 이상 징계처분**하도록 규정

○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임직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수사기관**은 출연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수사 사실은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미통보**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 비위 관리 소홀

* 감사기간 동안 임직원(53명)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결과 음주운전 적발 사례 없었음

2.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규정 개정 소홀

○ 「진흥원 보수규정」 제16조의6에 **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임직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 한편 인사혁신처는 '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1. 1. 5.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에 **고등학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진흥원 보수규정」에서 **자녀학비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지 **않은 채 운용** 중

* 감사기간 확인한 결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적정 지급 내용은 없었음

3. 피복비 지급 관련 규정 상위지침 불부합

○ 「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Ⅱ. 집행지침에 **피복**은 **임직원**이 **업무성격 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및 **경비원, 청소원** 등 **통일된 복장**이 필요한 경우만 집행하도록 경우

○ 한편 「진흥원 보수규정」 제19조에 **피복**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지침**과 **상반**된 내용으로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진흥원 보수규정」 **피복비 지급조건**이 「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과 달리 규정되어 **상위지침**과 **불부합**

4. 창업보육센터 관리규칙 개정 소홀

○ 「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 제20조에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

○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제28조에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되 장기 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을 적용하여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 중

-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은 '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에 대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을 적용하면서 **「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운용 중**

☞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운전경력증명서' 제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규정과 불부합한 자녀학비수당 및 피복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⑦ 입주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기업지원부)은 '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예비창업자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입주시설 5실과 창업보육센터 15실을 설치·운영

1. 입주기업 연장 계약기간 승인절차 부적정

○ 「입주기업 관리규정」 제9조에 **입주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입주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에 **입주자**가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진흥원(기업지원부)은 '17. 11. 30.부터 '20. 10. 22.까지 입주기간이 만료된 ㈜에코바이오솔루션 등 **3개 기업**이 **연장신청서**를 **미제출**하고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미실시**하였는데도 연장계약을 체결

2. 창업보육센터 퇴거 대상 입주기업 조치 부적정

○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 제20조에 **입주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되, 생명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경우 7년, 보육실 면적 2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칙 제28조에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30일 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진흥원(기업지원부)은 계약기간 연장 대상이 아닌 ㈜ㅇㅇㅇㅇㅇ이 '21. 12. 26. **입주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졸업** 및 **퇴거 미조치** 등 관련 **절차 미이행**

☞ 앞으로 입주기업 연장승인은 연장신청서를 제출받고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연장을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ㅇㅇㅇㅇㅇ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 및 퇴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3 청소년미래재단 6건

1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 위 재단(행정지원실)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39차례에 걸쳐 41명의 직원을 신규채용

1. 정년 규정을 위반한 채용 부적정

○ 「재단 인사규정」 제52조 등에 재단의 원장과 행정지원실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재단(행정지원실)은 '20년부터 '21년까지 **만 64세**인 강○○를 ○○○○○**장**으로 **채용**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2. 기간제근로자 연임 부적정

○ 「재단 인사규정」 제7조 등에 기간제근로자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보조사업 등 목적사업에 필요 시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도록 규정

○ 또한 「재단 청소년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9조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 **공개채용 미실시, 인사위원회 결정없이 2년 1개월간***을 **연장**하여 부적정 처리

* '21. 1.~'22.8.(1년 8개월) /'23. 1.~'23. 5.(5개월)

3. 가점적용 부적정

○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 합격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4명 미만 채용에 국가유공자 **가점** 적용을 **공고**하는 등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직원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행정지원실장 및 담당자 **"훈계요구"**

☞ 앞으로 직원 신규 채용 시 정년규정과 기간제근로자 연임기준을 준수하고, 가점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등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 금고 관리 등 예산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재단(행정지원실)은 3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금을 관리하고, 초과 세입 등으로 매년 결산잉여금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1. 금고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재단 예산회계규정」 제47조 등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재단 **금고**에 예치하고, **금고**의 **설치계약**은 재단과 해당 금융부서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 제52조 등에 회계관계 담당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부서**에 **통보**하고, 지출원은 금고로부터 **일계표**와 **월계표**를 보고받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14년 이후 금고 **설치계약 미실시**, 출납취급 금융부서에 회계관계 담당자의 **인감**과 **명판**을 **미제출 및 일계표**와 **월계표**를 제출받지 않는 등 금고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11년부터 '13년까지) ㅇㅇ은행 ㅇㅇㅇㅇ소와 금고 업무 취급약정 체결, 주거래 은행

2. 결산잉여금 목적 외 사용

○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 변제**에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

○ 또한 「재단 정관」 제26조에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이월 손실금 보전,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용도로 처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년부터 '22년까지 5억 1,245만원의 결산잉여금 중 **4억 704만원**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기타 기본경비 등 재단의 일반관리비로 **부적정 집행**

☞ 앞으로 「재단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주거래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하여 계약하여 예산회계업무를 처리하고, 결산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기본재산에 편입 또는 차입금변제에 활용, 목적사업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주의요구"**

3 청소년수련원 시설 관리 등 위수탁사무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재단(행정지원실)은 전라남도지사와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관리·위탁받아 운영

1.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 부적정

○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1조 등에 제3급 관사는 도지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관사별 **사용대상** 공무원 범위를 정하며,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조례 제54조 등에 사용자는 각종 공과금의 성실 납부 등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조에 전남도가 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 사항으로 규정

-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년부터 '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청소년 수련원 내 관리사를 **관사로 사용**하면서 **도지사 사용허가 미실시**, 관사 **관리대장 미작성**, 공과금 등 **운영비**를 **예산**으로 **부담**하는 등 관리 부적정

2.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업무처리 부적정

○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서」 제10조에 재단은 **성문화센터** 장비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처분**하는 경우 **전남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청소년성문화센터 복사기 등 2개 장비를 **전남도 승인없이 불용처분**

○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에 재단은 **성문화센터** 근무자에 대한 **업무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평가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성문화센터 근무자에 대한 **업무평가시스템**을 **미도입**하고, **업무평가**도 **미실시**

☞ 청소년수련원 관사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시정요구"**

☞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성문화센터 근무자에 대한 업무평가 시스템 도입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앞으로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사 사용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며, 성문화센터 장비는 전남도 승인을 받아 불용처분하는 등 수탁사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④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 위 재단(행정지원실 등 6개 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민간인이 참여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예산에 편성·집행

1. 홍보물품 등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 「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에 **행사**에 **참가**하는 **민간인**의 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 **회의 개최** 비용은 **회의비**로 **집행**하며, **행사운영비**에서는 **행사기념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재단(행정지원실 등 6개 부서)은 ’20년부터 ’22년까지 ㅇㅇㅇ지도자 ㅇㅇㅇ대회 등 **주관 행사**의 **참여자 식비**를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총 277건, 1억 425만원**을 부적정 **집행**

- 또한 ㅇㅇㅇ참여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 참석자 식비** 및 **다과비**를 회의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총 46건, 684만원**을 **부적정 집행**

-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ㅇㅇㅇㅇ지도자 등 **행사 참여자 기념품**을 **구입·배부**하여 **총 4건, 605만원**을 **부적정 집행**

2. 행사식비 매식단가 기준 초과 집행

○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여성가족부)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 1인당 식비 및 다과비**는 **1만원 이내**로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재단(행정지원실 등 5개 부서)은 ’20년부터 ’22년까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여자 식비**로 **1인당 1만 5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60건**을 **매식단가 기준 1만원**을 **초과**하여 **부적정 집행**

3. 소속 직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 「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 등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공통경비**는 **부서운영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행사운영비**에서 **부서연찬회 경비**는 **편성 불가**하다고 규정

○ 한편, 도 **‘20년 청소년미래재단 정기종합감사** 시 직원 워크숍 등 **부서 운영경비**를 **행사운영비**로 **부적정 집행**건에 대해 **“주의 요구”** 지적

- 그런데 위 재단(행정지원실 등 4개 부서)은 20년 정기종합감사 시 지적을 받았는데도 ’20년부터 ’22년까지 ㅇㅇㅇㅇ활동 등 **직원 화합 행사** 직원 **식비** 등을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총 26건 479만원**을 **부적정 집행**

☞ 행사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행정지원실장 **“훈계요구”**

☞ 앞으로 관계 지침에 따라 예산을 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행사운영비에서 홍보물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며, 매식단가 기준에 맞게 참여자 식비를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⑤ 가격협상 미이행 등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재단(행정지원실)은 ’20. 4월부터 ’23. 2월까지 11건, 1억 26백만원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

1. 가격협상 미이행 등 계약금액 산정 부적정

○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등에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대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2천만원 이하는 90%)** 이상 제출한 자 중 **가격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 10. 13.부터 ’22. 10. 20.까지 “ㅇㅇㅇ 관련 시설 용역” 등 **11건**(1억 2,640만원)을 **가격협상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인 견적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1,264**만원***의 **예산**을 **낭비**

* 1,264만원=1억 2,640만원(계약금액)-[12,640(예정가격)×90%(용역 낙찰하한율)]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미확인

○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 공직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 4월부터 ’23. 2월까지 ‘22년 ㅇㅇㅇ ㅇㅇ 조사 용역’ 등 총 **3건, 3,480만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계약 체결**

3. 수의계약 정보 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규정된 공개내역서 서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 사업명, 계약개요(계약일, 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률), 계약상대자(업체명, 대표자, 주소), 수의계약 사유, 사업장소, 기타 등

-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업체명, 계약금액 등 일반현황만을 **공개한 채** 계약률, 수의계약 사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미공개**

☞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으며, 낙찰률·수의계약 사유 등 세부사항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6 용역 등 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재단(행정지원실)은 '20. 4월부터 '23. 2월까지 검사조사 작성 대상 용역 12건을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업무를 추진

○ 「재단 예산회계규정」 제74조에 계약은 「지방계약법」 계약 조항을 준용하고, 「지방계약법」 제17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완료** 시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정 제75조에 공사·제조·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는 **검사** 또는 **검수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하도록 규정

○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6장 등에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은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재단(행정지원실)은 '20년 10월부터 '22년 11월까지 '전라남도 ○○○ ○○회 용역' 등 12건(2억 5,640만원)은 **검사원 미지정** 및 **검사조서 미작성**

- 또한 '○○○○도 ○○○○ ○○조사 용역' 등 8건*(1억 9,510만원)은 **준공검사** 미실시하였는데도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등 **검사업무**를 **부적정 처리**

* 용역 완료보고서 미제출(6건), 준공검사 미완료(1건), 준공검사 지연(1건)

☞ 앞으로 계약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 완료하고,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는 등 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Ⅳ. 모범 사례

1 [여성가족재단] 임직원 참여형 부패방지 시스템 정착·운영

기관중심 청렴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직원 참여형 청렴 콘텐츠 개발 및 확대

□ 추진개요

○ 청렴마일리지 운영: 부서 청렴리더 지정 및 4개 분야 18개 지표

○ 부패취약분야 자율적 제도 개선 적극 추진

□ 추진실적(2019~2022)

○ 직원 참여 활성화: 청렴 아침방송·캠페인·청렴퀴즈·청렴교육 등

○ 임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의무 실시(연2회, 5시간 이상)

○ 사전예방을 위한 예산·출장여비 모니터링 및 자체점검 활성화

○ 정기적(연2회) 특별청렴주간 시행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선제적 부패방지제도 정비를 통한 윤리경영 기반 강화

○ 성과와 보상 연계를 통한 직원들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 유도

-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우수직원 시상 및 포상 * 도 포상금 연계

□ 추진성과

○ 전라남도 부패방지시책평가 5년 연속('18~'22) "우수기관"선정·포상

○ 전라남도 출연기관 내부청렴도 조사 결과 4년 연속('19~'22) "1위"

○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국제인증('21.12.) 및 사후심사 완료('22.12.)

□ 기대효과

○ 재단의 적극적인 청렴실천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도민의 재단 신뢰감 제고

○ 도민체감형 반부패 청렴정책으로 반부패 역량 제고 및 청렴도 향상

2 [환경산업진흥원] 남부권 미세먼지 · 연구관리센터 유치

남부권 지역 특성에 따른 대기오염 현황 관측 및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시·군 단위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0. ~ ’23. 12.(15개월)

※ 총 사업기간: `22. 10. ~ `25. 12.(39개월)

○ 사 업 비 : 1,162백만원(국비 581 도비 232, 시·군비 256 자부담93)

※ 총 사업비: 3,022백만원, (~`23년) 1,162백만원, (`24년) 930백만원, (`25년) 930백만원

○ 주관기관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목포대학교 공동

○ 협력기관 : 전라남도, 목포·여수·나주·광양 시 등 남부권 내 지자체

○ 주요내용 : 남부권 내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기오염 현황 측정·분석 및 대책 마련

- 미세먼지 원인물질 인체영향 예측 및 대응 천연소재 개발
-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워크숍 개최, 노천소각 방지 교육, 주민 체감 미세먼지 진단·교육, 지역별 대기오염 관측·원인 DB 구축 및 제공

□ 추진실적

○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개소식 및 미세먼지 대응 포럼 개최

- 전남도 정무부지사, 전남도의회, 지자체, 권역별 미세먼지 센터 등 106명 참석
-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 ~2032) 등 주제발표 3건

○ 지역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필요성 인식 등 대응 방안 교육

- 1차: 조선대학교(대학생 및 일반시민 등 22명)
- 2차: 전남 인재개발원(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92명)

○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 추진

□ 기대효과

○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지역별, 배출원인별 기여도 평가 및 저감 대책 제안

○ 남부권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인체 영향 예측 및 환경성 질환 대응 소재 발굴

○ 미세먼지 성분 유발 질환 억제 천연소재(면역조절, 항암) 개발

○ 남부권 지자체별 대기오염 관측결과 DB 구축으로 연구연계 자료 제공

○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 제공

3 [청소년미래재단] 제1회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 개최

청소년의 재능과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문화콘텐츠를 즐기며 진로를 탐색하여 능력을 펼칠 장 마련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박람회 추진

○ 전남청소년행복성장협의체*의 요구 수렴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도 대표 청소년 특화사업 운영

* 협의체: 전남도 청소년관련협회 8개 기관(수련시설협회, 지도사협회, 상담지원협회, 방과후협의회, 학교밖센터, 성문화센터, 쉼터, 재단)로 구성된 협의체('22. 3월 발족)

□ 추진개요

○ 기　　간 : '22. 10. 28.(금) ~ 10. 29.(토)

○ 장　　소 : 전라남도청 일원

○ 인　　원 : 17,000명

○ 슬 로 건 : 청소년의 꿈을 디자인하고 행복을 찾다

○ 주요내용

- (개·폐회식) 주제영상, 세레모니, 우수 부스 시상 등
- (주요행사) 문화공연(군악대, 연예인 등), 토크콘서트, 부모자녀소통강연, 의회교실
- (특별행사) 로봇대회, 드론대회, 청소년예술제, 청소년꿈발표대회
- (체험행사) **미래생명존, 행복성장존, 진로드림존, 특별으뜸존*** 상설 부스 108개동

* **(미래생명존)** IoT, 드론, VR, AI 등 / **(행복성장존)** 우드버닝, 레진공예, 젤캔들 등
(진로드림존) 대학 특화 진로(항공, 자동차 등) / **(특별으뜸존)** 무중력체험, 전동휠 등

○ 소요예산 : 2억원(도비 100%)

□ 추진실적

1 도민, 청소년 등의 만족도가 높은 성공적인 박람회 추진 전남 최초

○ 도민, 청소년등 17,000명이 참가하였으며 지자체,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연계로 체험부스 4개존, 108개동 운영

○ 체험부스 만족도 96%, 박람회 지속 운영 요구 99% 등 박람회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에 박람회의 도민 칭찬글 다수 게재

○ 도민과 청소년의 참여 증대를 위해 부모자녀소통강연, 로봇·드론대회 등 시의성 있는 행사 추진

2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 청소년기획단, SNS서포터즈단, 요구조사 추진

○ (청소년기획단) 박람회 기획, 행사 사회, 체험부스 운영 및 평가 역할

- (구성현황) 도내 청소년 20명
- (사전활동) 위촉식, 회의 진행(3회), 온라인 단톡방 운영
- (박 람 회) 행사 사회(개·폐막식 등), 체험부스 운영(비즈공예) 및 우수부스 평가

○ (SNS서포터즈단) 개인 SNS 활동으로 박람회 홍보 추진

- (현황/내용) 도내 청소년 50명, 위촉식 및 박람회 홍보활동 7회

○ (요구조사) 강사 섭외, 체험 프로그램 요구 등 조사 추진

- (응답내용) 429명 참여, 출연진 섭외 및 체험부스 강화 등 반영

Ⅳ. 처분요구서

목 차

〈여성가족재단〉

①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통보) ····· 29

②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개선) ····· 33

③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훈계, 주의) ····· 39

④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43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미확인(주의) ····· 49

〈환경산업진흥원〉

① 진흥원 주기능 외 사업 추진 부적정(권고) ····· 52

② 정기감사 미실시 등 자체감사 업무처리 부적정(통보,주의) ····· 56

③ 피복비 집행 부적정(주의) ····· 59

④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초과 집행(주의) ····· 61

⑤ 차량 임차계약 부적정 및 저공해자동차 의무 임차 미이행(훈계, 주의) ···· 65

⑥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 개정 소홀(개선) ····· 70

⑦ 입주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리 업무처리 부적정(통보, 주의) ··· 75

〈청소년미래재단〉

①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훈계, 주의) ····· 78

② 금고 관리 등 예산회계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83

③ 청소년수련원 시설 관리 등 위수탁사무처리 부적정(시정, 통보, 주의) ···· 87

④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훈계, 주의) ····· 91

⑤ 가격협상 미이행 등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97

⑥ 용역 등 검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102

전 라 남 도
통 보

제 목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경영전략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전남여성가족재단 인사 규정」에 따라 재단의 인사관리 및 상벌 등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남여성가족재단 인사 규정」(이하 “재단 인사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정관 제29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원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재단에서 규정하는 인사관리 및 상벌,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인사 제도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 관련 중요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직원의 채용·승진·임

면·파견·해임·파면·포상·징계·변상처리 등에 관한 사항, 직원의 특별채용 및 특별승진,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재단법인 ○○○○○연구원 직제 및 인사 규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하고, 위원은 시 기획조정실장, 도 기획조정실장, 선임직 이사 중 1인, 외부전문가 1인, 연구본부장 및 직원 중 2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인사 규정」제27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기획경영팀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재단법인 ○○○○○○진흥원 인사 규정」제5조에 따르면 ○○진흥원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장 및 원외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공사 인사규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르면 규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 소관 본부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지방공무원법」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인사관리 및 상벌 등의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출연기관 등 인사위원회의 구성 방법 등을 참고하여 임용권자인 원장을 제외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별표 1]과 같

이 총 9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일반직 직원 채용 및 연봉 책정(안) 등 14건에 대하여 [별표 2] “재단 인사위원회 구성 명세”와 같이 재단의 임용권자인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 원장이 심의 안건을 상정한 후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20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임용권자인 원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재단 인사 규정」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앞으로 전라남도 내 출연기관 등의 인사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참고하여 원장을 제외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전남여성가족재단 인사 규정」개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생 략

[별표 2] 생 략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경영전략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별표] “재단 신규채용 현황”과 같이 공개경쟁 방법으로 28명 직원을 신규채용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남여성가족재단 인사 규정」(이하 “재단 인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별표 1의 직원 직급별 채용자격 요건에 의하되, 구체적인 채용절차 등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채용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전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항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넘은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며, 제7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가하여 70점 이상 높은 순서로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20. 11. 25.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제11조 제2항에 면접절차 및 평가항목, 동점자 처리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해야 하고, 이를 채용공고 시 공개하도록 하면서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면접시험의 동점자 처리방법 등을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하여 채용공고 시 공개하고, 공고문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한편 재단은 2022. 9. 14. 2022년 하반기 직원 통합채용에 대하여 공고를 하면서 면접시험 결과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높은 순서로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2022. 9. 14. 공고한 2022년 하반기 직원 통합채용에 따라 일반직 6급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2022. 12. 26. 응시자 2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표 1] "면접시험 결과 현황"과 같이 응시자 2명에 대하여 동일한 면접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1] 면접시험 결과 현황(2022.12.26.)

(단위 : 점)

응시번호	면접위원 개별점수					면접 점수 (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	면접결과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	93	89	87	69	91	89	면접 점수 동점
○○○○	89	86	91	90	88	89	면접 점수 동점

자료 : 전남여성가족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재단 인사 규정」 및 2022. 9. 14. 공고한 '2022년 하반기 직원 통합채용 공고문' 상에 면접시험의 동점자 처리방법에 대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한 채 채용공고 시 공개하지도 않았는데도 일반직 6급 1명을 채용한다는 사유로 면접시험 동점자 2명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2022. 12. 28. 면접 재시험을 계획을 수립[1]하여 2022. 12. 29. 면접 재시험을 실시하여 [표 2] “면접 재시험 결과 현황”과 같이 최종 합격자로 1명을 결정[2]하여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면접 재시험 결과 현황(2022.12.29.)

(단위 : 점)

응시번호	면접위원 개별 점수					면접 점수 (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	면접결과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	93	86	84	93	88	89	예비합격
○○○○	95	85	86	86	95	89.3	합 격

자료 : 전남여성가족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제11조 제7항을 참고하여 「전남여성가족재단 인사 규정」 제11조 제7항에 면접시험 시 동점자 처리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

1) 경영전략팀-0000(2022.00.00.), 2022년 하반기 직원 통합채용 면접시험 결과 및 동점자 재시험계획
(담당자) ○○○ - (경영전략팀장) ○○○ - (원장 직무대행) ○○○

2) 경영전략팀-0000(2022.00.00.), 2022년 하반기 직원 통합채용 동점자 재시험(면접) 결과 보고
(담당자) ○○○ - (경영전략팀장) ○○○ - (원장 직무대행) ○○○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경영전략팀)

훈 계 대 상 자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팀장 ○○○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20. 4월부터 2023. 2월까지 임직원[1]의 외부강의, 유연근무제, 휴가 및 휴직, 출장 등 복무사항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팀장 ○○○○은 2015. 7. 1.부터 20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외부강의 신고·승인 및 직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외부강의 신고·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전남여성가족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행동강령 제26조 제8항에 따르면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국

1) 2022.11월 기준, 정원 73명, 현원 67명(특정직 50명 포함)

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행동강령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재단 행동강령책임관은 ○○○○○팀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따르면「청탁금지법」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 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강의 등 일자, 대상, 주제(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점검하여야 하며, 강의일자, 대상, 주제 등을 판단하여 1회의 외부강의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2022. 10. 4.부터 2022. 11. 30.까지 ○○○○○팀장 ○○○○이 한국폴리텍V대학 캠퍼스 등에서 월 5회와 월 7회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원장의 승인없이 월 3회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2022. 7. 7. ○○○○○○팀장 ○○○○으로부터 2022. 7. 1.부터 2022. 7. 7.까지 5일간, 2022. 8. 22.부터 2022. 8. 26.까지 5일간 '2022년 전남형 ○○ ○○○ 사업 ○○○○○종사자 맞춤형 ○○○○○지원사업 컨설팅'에 대한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접수하고도 월 3회 초과 외부강의등에 대한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3. 출장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전남여성가족재단 복무규정」(이하 “재단 복무 규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장 직원은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남여성가족재단 위임전결 지침」 제3조 [별표 1] 단위사무별 전결권 구분에 따르면 연가, 병가 등 직원 복무관리는 경영전략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Ⅶ. 출장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에 따르면 소속직원이 경조사에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되고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하여야 하고, 재단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한하여 2인 이내로 출장조치를 하도록 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2021. 10. 12.과 2021. 10. 27.에 ○○○ 등 2명이 소속 직원이 아닌 ○○○○○연구원 ○장 ○○상 방문 등 3건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4. 유연근무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재단 복무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법령 및 규정,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인 12:00부터 13:00를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재단은 시차출근제를 적용하여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직원이 지각을 했을 경우에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차휴가 일수에서 빼거나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재단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 시 출입통제시스템[2]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여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소속 직원들이 시차출근제를 신청하여 유연근무를 할 경우에는 출·퇴근시 출입통제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여 1일의 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지각을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빼거나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 등 9명이 시차출근제를 적용하여 유연근무를 하면서 [별표] “출입통제시스템 지문 미

2) (계약명) 무인경비용역 계약 / (계약금액) 월 380,000원 / (계약상대자) ㈜에이디티캡스목포

입력 명세”와 같이 출·퇴근 시 지문을 입력하지 않아 1일의 근로시간인 8시간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총 29시간을 연가 일수에서 빼거나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무 등을 실시하도록 하지 않은 채 해당 부서장의 출·퇴근 확인을 받아 부적정하게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① 외부강의 신고·승인, 출장관리 및 유연근무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팀장 ○○○을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외부강의 신고·승인을 철저히 하고 출·퇴근 시 출입통제시스템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 입력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경영전략팀, 일·생활균형센터, 전남광역새일센터,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전남여성가족재단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예산편성 및 통장 인영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제2장의 4.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남여성가족재단 회계관리규정」(이하 “재단 회계관리규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경영전략팀장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남여성가족재단 인장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인장은 경영전략팀에서 새겨 교부 관리하고, 인장을 신조, 폐기 등 하였을 때는 인영 대장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모든 통장은 인영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재단 지출원인 인장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2023. 4. 21. 감사일 현재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입주자 부담금[1] 5,356,933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입주자 부담금을 관리하는 통장[2]에 인영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재단 지출원인 인장이 아닌 인영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여성폭력긴급전화원장1366 인장을 날인하여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 종합감사기간(2023. 4. 17.~4. 21.) 중 적발되자 2023. 4. 21. 재단 지출원인으로 인장을 변경하는 등 인영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3. 예산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는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

1)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5편에 따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입주자는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하여야 하고, 운영기관 통장에 예치하며 입주자 퇴거 시 반환하도록 규정(관리비 등 체납 시 공제)

2) 농협 ○○○-○○○-○○1-○○(예금주: ○○전남○○○)

또한「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제3장의 3에 따르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하고, 정원가산업무비 또는 부서운영업무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정원가산업무비 또는 부서운영업무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별표 1]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일괄 작성 명세”와 같이 여성가족재단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연찬 등 72건, 5,722천원의 업무추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최소 2건, 최대 7건을 묶어 총 21건으로 일괄 작성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손님 접대용 차류 구입 등 7건, 383천원을 정원가산업무비 또는 부서운영업무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나.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미준수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안전부의「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붙임 2.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 편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의 세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Ⅱ. 주요항목별 주요지침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무료 봉사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는 간식비를 포함하여 8천원 내에서 집행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을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행사운영비가 아닌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일·생활균형센터, 전남광역새일센터)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별표 2] “행사운영비로 부적정 집행 명세”와 같이 ○○○○ ○○○○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 16건 행사 참석자 식비로 5,246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다. 사업비 부적정 차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 회계관리규정」 제36조에 따르면 각 팀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목간 전용은 원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고, 예산 집행상 항간 이상의 과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후 원장이 집행할 수 있으며, 전용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82조에 따르면 출납원은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예산집행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산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전용하여 집행하고,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적인 금액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보조금 교부 지연, 연말 사업비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6건, 10,023천원을 1366 상조회통장 및 타사업 통장에서 차용하여 집행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상환하고 있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차용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및「전남여성가족재단 회계관리규정」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인영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생 략

[별표 2]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미확인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경영전략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등[1]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1)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8.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상대방이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경영전략팀)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 5. 19.부터 2023. 2. 20.까지 [별표]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미징수 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36건, 236,681천원의 수의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앞으로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권 고

제 목 진흥원 주기능 외 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기업지원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3년 3월에 350억원[1]을 투입하여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일반산업단지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 “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라고 한다) 제1조에 따르면 환경산업육성지원에 필요한 기술개발, 창업, 시제품생산 및 실험인증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환경실증실험지원사업, 측정업무 대행사업, 환경산업체 창업·보육·마켓팅 지원사업, 환경신기술 개발·이전·교류·교육 지원사업, 신기술 인증신청 지원사업, 환경산업 인력양성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 사업, 그 밖에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환경산업

1) 국비 145억원, 도비 145억원, 군비 60억원

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환경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이하 “진흥원 정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인은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창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기반시설 구축과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역환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정관」 제4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환경실증실험지원사업, 측정업무 대행사업, 환경산업체 창업·보육·마켓팅 지원사업, 환경신기술 개발·이전·교류·교육 지원사업, 신기술 인증신청 지원사업, 환경산업 인력양성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 사업, 그 밖에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 및 「진흥원 정관」에 따라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환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도지사로부터 환경산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은 지역환경산업 육성지원과 관련있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별표] “진흥원의 주기능과 무관한 위탁사업 수행 명세”와 같이 지역환경산업 육성지원과는 무관한 ○○군 ○○상인 ○○창업 지원사업 등 11건 18,531백만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환경산업 관련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진흥원 목적사업인 환경산업육성지원사업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권고)**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정기감사 미실시 등 자체감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3년 3월부터 2023. 2월까지 지역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산업지원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예산은 78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인원은 42명에서 57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최근 5년간 진흥원 예산 및 인원 현황(2018년~2022년)

(단위 : 억원, 명,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간 증가률
예산	78	166	222	337	380	387%
인원	42	46	53	55	57	36%

자료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감사규정」(이하 “진흥원 감사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회계에 관련된 업무, 사업계획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정한 업무,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시하는 업무를 감사의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4조에 따르면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1년에 1회 정기

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인 ○○○○○진흥원 등 5개 기관은 2023. 4. 21.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독립적 감사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독립적 감사전담조직 설치 운영 현황

(단위 : 억원, 명)

기관명	총 인원	예산액	감사전담 인원
전남○○○○○진흥원	182	389	3
전남○○○○○	127	1,580	4
전남○○○○○연구원	94	355	2
전남○○○○○진흥원	94	460	2
전남○○○○○재단	83	840	3

자료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진흥원은 매년 증가하는 예산과 조직 등에 대하여 회계에 관련된 업무, 사업계획 및 집행사항,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업무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독립된 감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19년부터 20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채 2023. 4. 21. 감사일 현재 [표 3]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감사업무 담당 현황”

과 같이 경영기획부 경영기획팀 ○○○ 팀장 등 3명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감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3]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감사업무 담당 현황

부서	팀명	직명	성명	사무 분장사항
경영기획부	경영기획팀	팀장	○○○	◦ 경영기획팀 업무 전반 등 ◦ 감사 관련 업무(정기, 일상감사)
		연구원	○○○	◦ 회계업무 등 ◦ 감사 관련 업무(정기, 일상감사) 지원
		연구원	○○○	◦ 회계업무 등 ◦ 감사 관련 업무(정기, 일상감사) 지원

자료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① 최근 5년간 증가한 예산 및 조직 등에 대한 회계업무, 사업계획 등을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시고**(통보)**

② 앞으로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감사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피복비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임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를 위하여 피복비 55,544천원[1]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Ⅰ. 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2] 경비 나. 세부집행요령 피복비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하고, 경비원, 청소원 등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여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 2019년 8,694천원, 2020년 17,600천원, 2021년 14,750천원, 2022년 14,500천원

따라서 진흥원은 피복비는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경비원, 청소원 등 통일된 복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피복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근무 의욕 고취를 사유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표] “임직원 피복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총 206명에게 4회에 걸쳐 55,544천원의 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임직원 피복비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급대상	집행일	구매처	집행액	구입품목	집행사유
총계	206명	4회		55,544		
1	46명	2019.11.15.	○○○○	8,694	바람막이	근무 의욕 고취
2	43명	2020.05.27.	○○○○	17,600	상의, 하의, 신발	근무 의욕 고취
3	59명	2021.08.11.	○○○○○	14,750	상의, 하의, 신발	근무 의욕 고취
4	58명	2022.05.19.	○○○○	14,500	상의, 하의, 바람막이	근무 의욕 고취

자료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피복비를 집행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초과 집행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기업지원부, 일자리지원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재단이 수행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1]를 총 40,000천원을 편성하여 37,646천원을 집행하였다.

[표 1] 진흥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2019년~2022년)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 편성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비고
총 계	40,000	37,646	2,350	
2019년	10,000	8,615	1,384	
2020년	10,000	9,313	686	
2021년	10,000	9,782	217	
2022년	10,000	9,936	63	

자료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Ⅱ. 주요 항목별 편성기준에 따르면 당해년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2] 성격의

1)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2)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출연기관별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은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표 2] “진흥원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연간 기준액 현황”과 같이 연간 기준액 10백만원 내에서 편성하도록 통보하였다.

[표 2] 진흥원 시책업무추진비 연간 기준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책사업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진흥원은 시책사업 관련한 행사에 따른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제작비 등은 전남도로부터 통보받은 연간 기준액 10백만원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 일자리지원부)은 시책사업과 관련한 행사를 추진하면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제작비 등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별표]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적정 명세”와 같이 ○○군 ○○상인 육성 창업○○사업 기념품 구입 등 11건, 67,430천원을 행사운영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지출한 금액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세출예산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등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차량 임차계약 부적정 및 저공해자동차 의무 임차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

훈 계 대 상 자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환경산업을 육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3대의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관리하고 있다.

2. 차량 임차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라 한다)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5호 바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구매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 기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차량 임차용역 계약을 할 경우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2건, 276,999천원의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표] “차량 임차계약 부적정 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최소 2건에서 최대 10건으로 분할하여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

결하였고, 2023년 1월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저공해자동차 의무 임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8조의 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 6 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제1종 저공해 자동차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없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되어 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긴급자동차, 폭발위험장소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흥원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 등 승용차량 7대를 업무용 차량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2021년부터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대상 기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진흥원은 2021년부터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매·임차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여 저공해자동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21년부터 업무용 승용차량을 임차할 경우 전기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 자동차를 임차하여야 하는데도 기업지원부 등 5개 부서에서 올뉴말리부 승용차 등 일반자동차 10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임차하여 저공해자동차 의무 임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① 차량 임차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을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차량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정정보처리를 이용하여 단일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매·임차할 시「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 개정 소홀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 기업지원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3년 3월부터 2023년 4월 21일 감사일 현재까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규정 관리규정」(이하 “진흥원 규정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규정은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인사규정」(이하 “진흥원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징계대상자는 별표 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최소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임직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수사기관은 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수사 사실은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출연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인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속 임직원의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에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 비위 관리[1]를 소홀히 하고 있다.

3.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규정 개정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보수규정」(이하 “진흥원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16조의6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기별로 보수지급일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보수규정」 제32조에 따르면 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 규정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규정은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1) 이번 감사기간(2023. 4. 17.~4. 21.) 동안 53명 임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없었음

한편 인사혁신처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21. 1. 5.「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진흥원은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2] 지급 규정인「진흥원 보수규정」제16조의6을 삭제하지 않은 채 운용하고 있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피복비 지급 관련 규정 상위지침 불부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행정안전부의「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② 경비 나. 세부집행요령 피복비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하고, 경비원, 청소원 등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여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진흥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르면 진흥원은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진흥원 규정 관리규정」제3조에 따르면 규정은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소속 직원에 지급되는 피복비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

2) 이번 감사기간(2023. 4. 17.~4. 21.) 동안 확인한 결과 2021년 이후부터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부적정 지급은 없었음

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하도록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부)은 20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진흥원 보수규정」의 피복비 지급 기준을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의 기준과 달리 규정되어 상위 지침과 불부합한데도 규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5. 창업보육센터 관리규칙 개정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이하 “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르면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에 따르면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기간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을 적용하여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칙」 제20조를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은 20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기간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을 적용하면서 「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칙」 제20조를 개정하지 않은 채 운용하고 있

어 관련 규정 개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규정과 불일치하는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피복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입주기간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에 따라 최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

전 라 남 도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입주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기업지원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환경산업 관련 예비창업자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입주시설 5실과 환경산업체 창업·보육·마케팅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15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입주기업 연장계약 기간 승인절차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9조에 따르면 진흥원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가 입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으로부터 입주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받고,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은 입주기업으로부터 입주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표 1] “입주기업 연장신청 및 결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11. 30.부터 2020. 10. 22.까지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등 3개 기업으로부터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연장을 결정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입주기업 연장신청 및 결정 부적정 현황

연번	입주기업명	입주계약 만료일	연장 결정일	부적정 내용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여부	심의회 심의 여부
계	3개 기업				
1	㈜ㅇㅇㅇㅇㅇㅇㅇㅇ	2017.11.30.	2017.11.30.	미제출	없음
2	㈜ㅇㅇㅇ	2019.06.07.	2019.06.07.	〃	〃
3	㈜ㅇㅇㅇㅇㅇㅇㅇ	2020.10.22.	2020.10.22.	〃	〃

자료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창업보육센터 퇴거 대상 입주기업 조치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입주자는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에는 졸업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가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졸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등에 대한 입주기간을 7년 이내로 하며,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입주자는 창업보육센터를 졸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기업지원부)은 [표 2] “창업보육센터 퇴거 대상 입주기업 현황”과 같이 ㈜ㅇㅇㅇㅇ의 입주 계약기간이 2021. 12. 26.로 만료되었고 입주기간 연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0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창업보육센터 졸업 및 퇴거 조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2] 창업보육센터 졸업 및 퇴거 대상 입주기업 현황

입주기업(호실)	입주 계약기간	졸업 및 퇴거사유
㈜ㅇㅇㅇㅇ	2019.12.25.~2021.12.26.	입주 계약기간 만료

자료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① 앞으로 입주기업 연장승인은 연장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장을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ㅇㅇㅇㅇㅇ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 및 퇴거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행정지원실)

훈 계 대 상 자 ①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

②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붙임] “직원 신규채용 명세”와 같이 39차례에 걸쳐 41명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다.

2. 정년 규정을 위반한 채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이하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인사규정」(이하 “재단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원장은 계약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의3에 행정지원실장의

채용도 계약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재단 인사규정」제52조 및 제52조의 2에 따르면 원장과 행정지원실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이 되었을 때는 당연퇴직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원장과 행정지원실장을 제외한 직원을 채용할 시에는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수련원장을 채용공고를 하면서 공고문에 연령 제한을 명시하지 않아 만 64세인 강○○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 청소년수련원장으로 채용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기간제근로자 연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행정안전부의「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재단 인사규정」제7조에 따르면 재단의 기간제근로자도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제7조에 따르면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보조사업 또는 위탁받은 사업의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제9조, 제10조, 제14조에 따르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채용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21. 1. 1.부터 2023. 5. 15.까지 노○○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면서 [표 1]과 같이 2021. 1. 1.부터 2022. 8. 31.까지 1년 8월간과 2023. 1. 1.부터 2023. 5. 15.까지 5개월간 등 총 2년 1개월을 연장계약을 하면서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없이 연장계약을 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부적정 채용 현황

명단	구분	계약기간	주요업무	채용방법	부적정 사유
노○○	1회	2020.09.01.~2020.12.31.	사업전담(○○○마당)	공개채용	
	2회	2021.01.01.~2021.12.31.	사업전담(○○○운영)		·공개채용없이 연장 ·인사위원회 결정없음
	3회	2022.01.01.~2022.08.31.	○○○○센터 사업업무 지원		·공개채용없이 연장 ·인사위원회 결정없음
	4회	2022.09.29.~2022.12.31.	파견대체 (○○○○팀 업무 전반)	공개채용	
	5회	2023.01.01.~2023.05.15.	파견대체 (○○○○팀 업무 전반)		·공개채용없이 연장 ·인사위원회 결정없음

자료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4. 가점 적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Ⅲ. 직원의 인사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개경쟁시험 등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고,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가점을 적용하여 채용시험을 공고할 경우에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가점 적용을 적용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표 1]과 같이 직원채용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 적용을 공고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은

① 직원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 ○○○○○ ○○○을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직원 신규 채용 시 정년 규정과 기간제근로자 연임기준을 준수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등 직원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금고 관리 등 예산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행정지원실)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35개의 계좌를 개설[1]하여 공금을 예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초과세입 등으로 결산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금고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예산회계규정」(이하 “재단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르면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재단 금고(지정금융부서)에 예치하여야 하고, 금고의 설치계약은 재단과 해당 금융부서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5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담당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부서에 통보하고, 출납취급 금융부서로부터 출납

1) ○○은행 ○○○○지점 7개, ○○은행 ○○지점 13개, ○○은행 ○○○○부 7개

에 사용하는 직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통지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1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행정지원실장은 수입총괄표를 작성한 후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원장의 결재를 받고, 지출원은 금고로부터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일계표와 월계표로 보고받고, 금고에 대한 검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은행과 금고를 지정하여 금고의 설치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계관계 담당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부서에 통보하며, 금고로부터 수입과 제출의 내역에 대한 일계표와 월계표를 보고받도록 하여 금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광주은행 도청출장소와 금고의 설치계약을 한 후 설치계약 기간이 종료된 2014년부터 20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금고의 설치계약을 실시하지 않았고, 출납취급 금융부서에 회계관계 담당자의 인감과 명판을 통보하지 못하였으며, 수입과 제출의 내역에 대한 일계표와 월계표를 제출받지 못하는 등 금고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결산잉여금 목적 외 사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Ⅱ.예산편성의 원칙 6. 잉여금의 처리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제26조에 따르면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이월 손실금 보전,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용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결산잉여금 발생 및 예산 편성 현황”과 같이 512,455천원의 결산잉여금 중 407,047천원을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 또는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등으로 편성하지 않은 채 [별표] “결산잉여금 부적정 예산 편성 명세”와 같이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기타 기본경비 등 일반관리비 용도로 부적정하게 편성·집행하였다.

[표] 결산잉여금 발생 및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결산잉여금(A+B)	목적사업(A)	목적외 사업(B)
계	512,455	105,408	407,047
2020년	63,300	0	63,300
2021년	176,672	26,158	150,514
2022년	272,483	79,250	193,233

자료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은 앞으로 주거래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는 설치계약을 추진하고, 「재단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예산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기본재산에 편입 또는 차입금변제에 활용하거나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등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청소년수련원 시설 관리 등 위수탁사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행정지원실)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1]하여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과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를 관리·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 청소년수련원 시설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1조에 따르면 관사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구분하고,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52조에 따르면 3급 관사는 도지사가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54조에 따르면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도록 되어 있고, 제56조에 따르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청소년수련원

1) (위수탁 협약 체결일)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2015. 12. 1. /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2023. 4. 1.

위·수탁 협약서"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청소년수련원 내 관리사를 관사로 사용할 경우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관사 공과금 등 운영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20년부터 2023년 4. 2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청소년수련원 내 시설관리사를 관사로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고 있으며, 별도의 전기·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관사 운영비를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원 시설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있다.

[표 1] 청소년수련원 관리사 부적정 사용 현황

구분	사용기간	사용자
9개 실		13명
1층 1-1호 실	2020. 01. 01. ~ 2023. 03. 31.	○○○
1층 1-2호 실	2020. 03. 02. ~ 2020. 06. 16.	○○○
	2022. 03. 07. ~ 2022. 03. 23.	○○○
	2023. 01. 02. ~ 2023. 4. 21. 감사일 현재	○○○
1층 1-3호 실	2020. 01. 01. ~ 2020. 07. 20.	○○○
	2021. 04. 19. ~ 2022. 11. 30.	
1층 2호 실	2020. 01. 01. ~ 2021. 12. 31.	○○○
	2022. 01. 03. ~ 2023. 4. 21. 감사일 현재	○○○
2층 1-1호 실	2020. 01. 01. ~ 2023. 4. 21. 감사일 현재	○○○
2층 1-2호 실	2020. 01. 01. ~ 2020. 12. 31.	○○○
2층 2-1호 실	2020. 01. 01. ~ 2021. 12. 31.	○○○
	2023. 03. 06. ~ 2023. 4. 21. 감사일 현재	○○○
2층 2-2호 실	2021. 05. 01. ~ 2022. 11. 30.	○○○
2층 2-3호 실	2020. 01. 01. ~ 2023. 03. 31.	○○희

자료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3.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서」 (이하 “성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서”라고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재단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성문화센터”라고 한다)의 장비를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처분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에 따르면 재단은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업무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직무역량강화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성문화센터의 장비를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불용처분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2]와 같이 성문화센터 복사기 등 2개 장비를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승인없이 불용처분하여 물품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청소년성문화센터 불용물품 부적정 처리 현황

(단위 : 대, 천원)

연번	장비명	규격	수량	금액	취득일	불용사유	불용결정일	비고
1	복사기	IR2520	1	2,853	2010.12.	고장	2022.01.	폐기물 수거업체 무상 양도
2	디지털키	MI350D	1	260	2009.12.	고장	2021.09.	파쇄

자료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3. 4. 21. 감사일 현재까지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평가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은

①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관사는 전라남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시정)**

②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청소년성문화센터 근무자에 대한 업무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통보)**

③ 앞으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공과금 등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물품을 불용처분할 때에는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탁 사무의 수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행정지원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성문화센터)

훈 계 대 상 자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민간인이 참여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 홍보물품 등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Ⅱ. 주요항목별 집행지침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홍보비, 임차료 등을 집행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식비(간식비 포함)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여 매식단가 기준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사·홍보비 유의사항으로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시 다과(회의직전·후의 식사제공 포함) 등 회의 개

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간식비 및 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기념품 구입비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해서는 안 되며,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성문화센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1]과 같이 ○○○○도자 ○○○○대회 등 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식비 및 다과비를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총 277회, 104,258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1] 행사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식비 및 다과비 현황(2020년~2022년)

(단위 : 건, 원)

연도	건	집행액	비고
계	277	104,258,375	
2020년	52	7,668,950	
2021년	96	17,593,495	
2022년	129	78,995,930	

자료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2]와 같이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식비 및 다과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회의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총 46건, 6,843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2] 행사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회의비 현황(2020년~2022년)

(단위 : 건, 원)

연도	부서명	회의 개최 건수	집행액
계		46	6,843,860
2020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8	1,284,000
	학교밖지원센터	5	539,400
2021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7	600,540
	학교밖지원센터	12	1,881,520
2022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6	576,500
	학교밖지원센터	8	1,961,900

자료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행정지원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표 3]과 같이 청소년지도자 소통공감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행사참여자인 청소년지도자에게 기념품 등을 행사운영비로 총 4회, 6,053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3] 행사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기념품 구입비 현황(2020년~2022년)

(단위 : 명, 원)

부서명	집행일	적요	구입품목	지급대상	지급인원	집행액
		4건				6,053,750
행정지원실	2022.12.12.	2022년 ○○○지도자 ○○○○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	소금	지도자	300	2,690,000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2022.12.23.	전라남도 ○○○○○○기구 활동 보고회 운영에 따른 참가자 기념품(도서) 구입	도서	청소년	70	1,120,000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2021.11.29.	2021년 ○○○ 사업보고대회 기념품 구입	핸드크림	종사자	71	843,750
청소년수련원	2022.12.07.	전남 ○○ ○○○○○ 기념품	스틱형 꿀유자차	청소년, 지도자	70	1,400,000

자료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3. 행사식비 매식단가 기준 초과 집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 사업별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시 참여자의 1인당 식비 및 다과비는 10,000원 이내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식비 및 다과비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라 10,000원 이내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은 ○○○○○○○마당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행사 참여자의 식비 및 다과비로 1인당 15,060원을 집행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4] 및 [별표 1]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관련 단가 초과 식비 부적정 집행 세부 명세”와 같이 총 60건 32,903천원의 식비를 집행하면서 총 60건을 매식단가 기준 1만원을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4]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관련 단가 초과 식비 부적정 집행 현황(2020년~2022년)

(단위 : 건, 원)

연도	건수	집행액	비고
계	60	32,903,720	
2020년	6	1,709,440	
2021년	22	6,048,220	
2022년	32	25,146,060	

자료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4. 소속 직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Ⅲ. 출연기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경비로써 각 부서단위로 편성하고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Ⅵ.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20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정기종합감사 시 직원 워크숍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건에 대하여 주의요구를 하였다.

따라서 재단은 2020년도 정기종합감사 시 지적받은 행사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화합행사나 사기양양을

위한 물품 등의 구입은 부서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은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농촌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식사 등을 행사운영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 5] 및 [별표 2] “행사운영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소속 직원 참여 행사 세부 명세”과 같이 소속 직원 식사비 및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총 26건 4,798천원을 행사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5] 행사운영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소속 직원 참여 행사 현황 (2020년~2022년)

(단위 : 건, 원)

구분	연도	건수	집행액	비고
계	계	26	4,798,290	
농촌봉사활동(사회공헌활동) 등 소속직원 화합 행사 식비	2020년	4	1,093,950	
	2021년	5	1,263,460	
	2022년	10	1,750,880	
상품권 등 구입비	2021년	4	420,000	
	2022년	3	270,000	

자료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① 행사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 ○○○을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을 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행사운영비에서 홍보물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며, 매식단가 기준에 맞게 참여자 식비를 집행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생 략

[별표 2]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가격협상 미이행 등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행정지원실)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1건, 126,400천원의 용역 계약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하였다.

2. 가격협상 미이행 등 계약금액 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예산회계규정」 제74조에 따르면 입찰방법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관계 규정을 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에 대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견적 가격을 비교 검토 후 해당 업체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20. 10. 13.부터 2022. 10. 20.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붙임]과 같이 ‘ㅇㅇㅇ 관련 시설 ㅇㅇㅇ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방안 용역’ 등 11건을 가격협상 절차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인 견적금액으로 낙찰률 100%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12,640천원[1]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미확인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등[2]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및 재단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에 따르면 진흥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

---

1) 12,640천원 = 126,400천원(계약금액)-[126,400(예정가격)×90%(견적공고 시 용역 낙찰하한율)]

2)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8.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상대방이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1]과 같이 '2022년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 등 총 3건, 34,800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미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용역)명	계약일	계약금액
	3건		34,800
1	2022년 ○○○실태조사	2022.05.16.	17,900
2	2022년 ○○○상담연구	2022.06.09.	8,400
3	제1회 전라남도 ○○○박람회 ○○○○○대회	2022.10.17.	8,500

자료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4. 수의계약 정보 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계획,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 시 규정된 공개내역서 서식[3]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서식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ㅇㅇㅇ 관련시설 ㅇㅇㅇ ㅇㅇ조사 및 ㅇㅇㅇㅇ방안 용역' 등 4건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직급체계 직급별 임금 및 체계 개선 제규정 검토 용역 등 7건은 재단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업체명, 계약금액 등 일반현황만을 공개할 뿐 계약률, 수의계약 사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은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계약률·수의계약 사유 등 수의계약 세부사항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사업명, 계약개요(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률), 계약상대자(업체명, 대표자, 주소), 수의계약 사유, 사업장소, 기타 등을 기재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등 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행정지원실)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2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 업무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예산회계규정」(이하 “재단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르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의 계약관계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5조에 따르면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검사 또는 검수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행정지원실장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검사 또는 검수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지정된 검수자가 검사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완료보고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행정지원실)은 2020. 10. 30.부터 2022. 11. 28.까지 [별표] "용역계약 검사·검수 부적정 현황"과 같이 '전라남도 ○○○○○○회 용역' 등 12건, 256,400천원에 대하여 검사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검사·검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별표]와 같이 2020. 10. 30.부터 2022. 11. 28.까지 체결된 '전라남도 ○○○○ ○○조사 용역' 등 8건, 195,100천원의 용역 계약에 대하여 6건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1건은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1건은 준공검사가 지연되었는데도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은 앞으로 계약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완료보고서를 통지받도록 하며,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는 등 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